

[고용보험적용 공사범위 확대]

“

내년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범위가 현행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공사금액고시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에 따르면 지난 1998년 7월 고시 이후 적용되어온 고용보험 적용제의 건설공사(3억 4천만원 미만)의 범위를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용도, 구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획일적 산정이 곤란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에 대해선 연면적 330㎡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적용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도 계속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내년 이후 착공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지만

현행 건설업 적용제외규정(총 공사금액 3억 4천만원 미만 공사) 때문에 상당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어 고용보험 확대 취지가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나아가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완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주 부담, 행정능력 등을 고려해 일단 내년도에 이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사업자의 보험료 비용 및 사무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제 개선, 보험사무조합제도 개선, 서식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동부의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